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안선영 연구위원

Vol.16 2014. 08.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 ▶ 학교와 학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방식이 청소년기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일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낮설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은 높지 않음.
-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당 비율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사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환경은 기본적인 법규정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감독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개선 노력이 요구됨.
- ▶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됨.

| 조사대상 |

- ▶ 전국 16개 시·도의 중학교(4,961명) 및 고등학교(5,158명) 1~3학년 학생 총 10,119명(남자: 5,311명, 여자: 4,808명)

| 조사방법 |

-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 ▶ 2013년 5월~7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고등학교 졸업 이전까지 3분의 1 이상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함.**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중학교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0%를 넘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3분의 1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¹⁾

[표 1] 학년별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명))

내용/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경험 유무	유	3,4(54)	5,8(94)	10,7(183)	19,0(326)	28,4(488)	33,3(562)
	무	96,6(1531)	94,2(1540)	89,3(1528)	81,0(1392)	71,6(1228)	66,7(1127)
전체		100,0(1585)	100,0(1634)	100,0(1711)	100,0(1718)	100,0(1716)	100,0(1689)

-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의 소개’와 ‘인터넷 알바사이트’를 통해 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교나 정부의 고용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친구나 지인의 소개’가 60.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알바사이트’가 19.1%로 두 번째, ‘가족 또는 친척 소개’가 10.8%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나 선생님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으며,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구한 경우도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 본 조사가 1학기 말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각 학년의 2학기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본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각 학년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여기서 제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 구직 경로

내용/구분	%
친구나 지인 소개	60.7
학교 또는 선생님 소개	1.3
가족 또는 친척 소개	10.8
인터넷 알바사이트(예:알바몬/알바천국 등)	19.1
고용부 워크넷	.5
생활정보지(벼룩시장 등)	.8
직업소개소	.6
업소 구인광고(길거리나 상점의 광고)	3.6
기타	2.7
전체	100.0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뚜렷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

(단위: %(명))

내용/구분		부교육수준				모교육수준				경제적수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석사 이상	낮은편	보통	높은편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23.9(837)	17.9(114)	12.3(381)	6.7(47)	22.4(984)	16.8(105)	10.2(257)	5.4(21)	26.9(616)	15.9(637)	12.0(443)
	없다	76.1(2670)	82.1(522)	87.7(2708)	93.3(653)	77.6(3418)	83.2(519)	89.8(2259)	94.6(369)	73.1(1670)	84.1(3374)	88.0(3262)
	전체	100.0(3507)	100.0(636)	100.0(3089)	100.0(700)	100.0(4402)	100.0(624)	100.0(2516)	100.0(390)	100.0(2286)	100.0(4011)	100.0(3705)
	χ ²	213.069***				206.257***				231.085***		

* $p < .05$, ** $p < .01$, *** $p < .001$

●●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직종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으로 28.2%를 차지했고,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가 24.2%로 두 번째,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이 13.1%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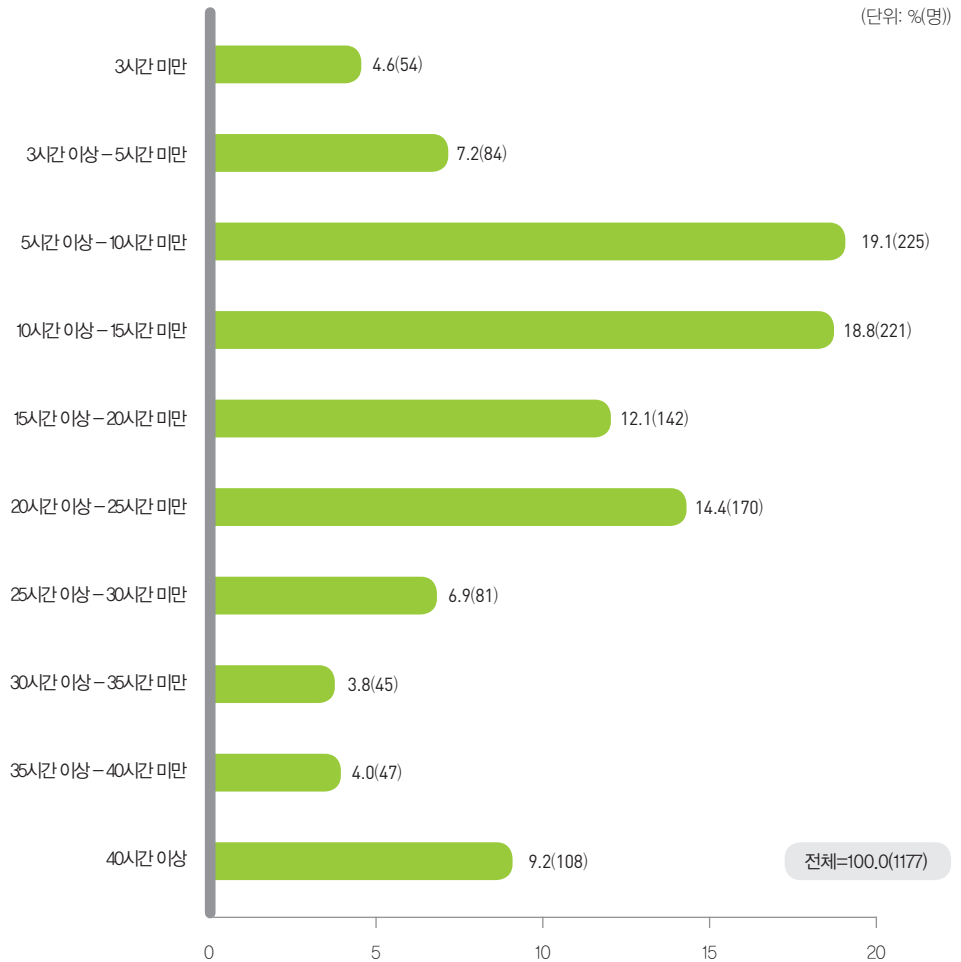
[표 4] 가장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내용/구분	%	빈도	내용/구분	%	빈도
전단지돌리기(스티커 붙이기)	24.2	279	카페 점원	1.7	19
24시간 편의점 점원	5.1	59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	1.8	21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점원	7.4	85	놀이공원 도우미	.4	4
음식점 서빙	28.2	325	주유소 주유원	1.5	17
음식 오토바이 배달	2.4	27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8	10
PC방 점원	1.3	14	사무업무 보조	1.0	12
뷔페, 웨딩홀 안내/서빙	13.1	151	공장에서 노동	1.0	12
건설현장 노동	.6	7	노래방 점원	.1	2
택배 집 나르기 (이사짐 운반 포함)	1.1	13	(노래방을 제외한) 유흥업소 직원	.0	.0
퀵서비스, 심부름 서비스	.2	2	기타	8.2	94

※ 주: 전체=100.0(1152)

●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

청소년들의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5시간이상~10시간 미만'이 1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시간이상~15시간 미만'이 두 번째로 높은 18.8%로 나타났다. 주당 20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총 38.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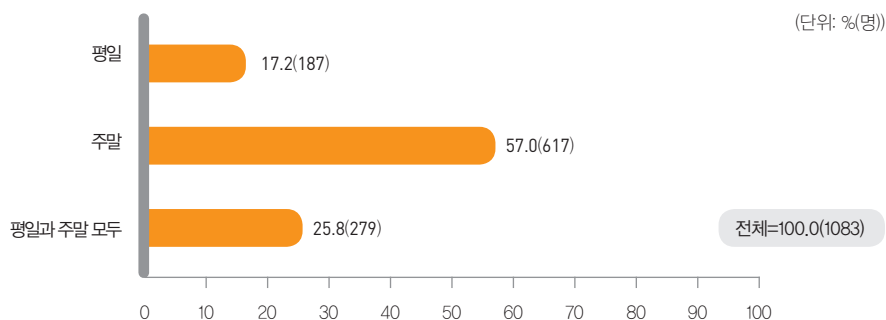


※ 주: 당초 100.0%를 기준으로 하는 척도이나 그래프 상 평균주당근무시간을 보다 명확히 보이게 하기 위해 20.0%로 조정되었음.

[그림 1] 평균 주당 근무시간

● 아르바이트 근무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언제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주말'에만 한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일과 주말 모두' 한다는 응답은 25.8%, '평일'만 한다는 응답은 17.2%로 나타남.



[그림 2]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대

● 연소자 보호 노동관계 법령, 특히 구체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수준이 낮음.

연소자 근로 보호 관련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은 '아르바이트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61.5%)과 '2013년도 최저임금'(55.2%) 두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은 17항목 중 5항목을 차지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15.2%),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15.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10.6%)이 낮은 인지율을 보였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고용주가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45.7%였는데 비해,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8.7%로, 구체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비율은 6.1%에 그쳐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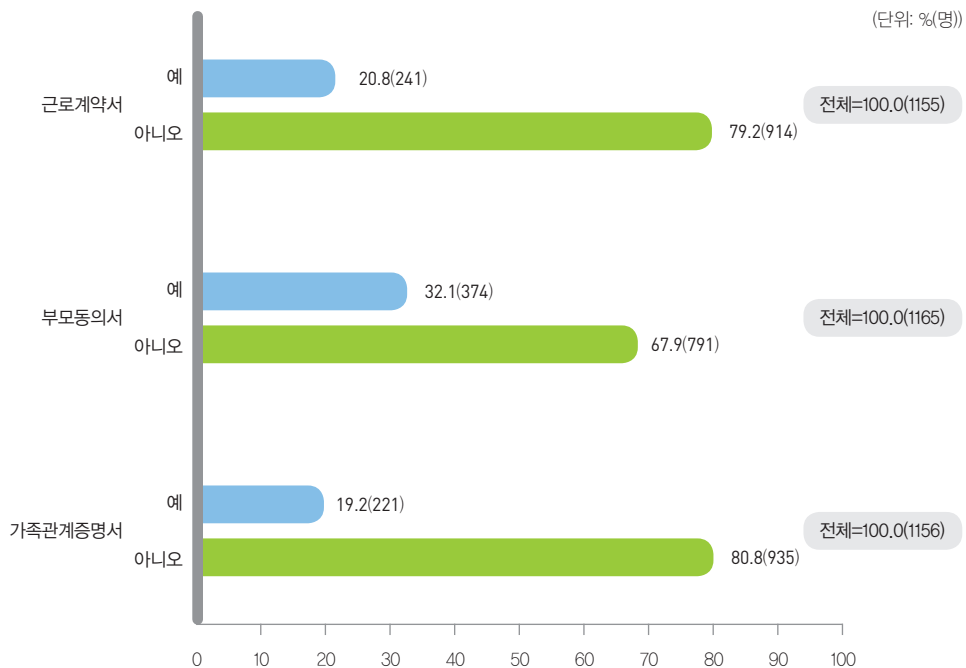
[표 5] 연소자 보호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

(단위: %(명))

내용/구분	인지여부		
	안다	모른다	전체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61.5(6109)	38.5(3832)	100.0(9941)
2013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임	55.2(5488)	44.8(4452)	100.0(9941)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45.7(4590)	54.3(5453)	100.0(10044)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함	41.3(4150)	58.7(5906)	100.0(10056)
만19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고용주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일/업종이 있음	34.3(3452)	65.7(6605)	100.0(10057)
만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8.9(2905)	71.1(7149)	100.0(10054)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음	28.3(2817)	71.7(7126)	100.0(9943)
휴일 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로 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음	28.2(2806)	71.8(7153)	100.0(9959)
일하다 부당한 처우 시,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가 있음	25.9(2605)	74.1(7450)	100.0(10055)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어떻게 일하고 임금을 어떻게 받는 등의 내용의 근로계약서 2장 만들어서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함	24.8(2472)	75.2(7486)	100.0(9958)
만15세 미만(중학교 2학년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23.5(2365)	76.5(7686)	100.0(10050)
고용주가 청소년근로자에게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시킬 경우,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2.4(2225)	77.6(7730)	100.0(9955)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말린 임금을 지급해야 함	15.2(1514)	84.8(8434)	100.0(9949)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15.1(1520)	84.9(8532)	100.0(1005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10.6(1066)	89.4(8995)	100.0(10061)
고용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 신청 가능	8.7(877)	91.3(9169)	100.0(10046)
학교나 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음	6.1(616)	93.9(9453)	100.0(10069)

- 근로계약서 등 법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인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 또는 작성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 20.8%, 부모동의서 32.1%, 가족관계증명서 19.2% 등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근로계약서의 작성 비율이 20.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이 열악함을 단면적으로 보여줌.



[그림 3]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 아르바이트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가 높음.

근로계약서 등 법에 정해진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1번 이상 '뜨거운 것에 덴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고 '네 번 이상' 덴 적이 있다는 응답도 6.8%에 달했음.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4.3%로 재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발생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 밖에도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4%,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6%, '뼈가 부러지거나 뺨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4% 등으로 나타남.

[표 6]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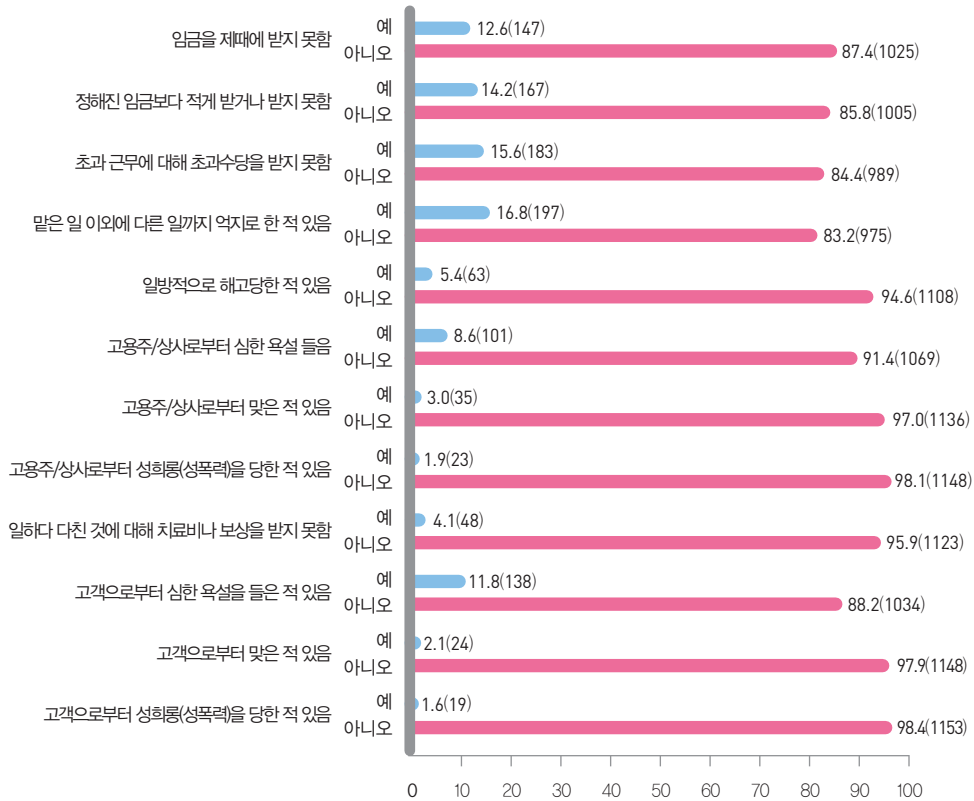
(단위: %(빈도))

내용/구분	없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상	N
뜨거운 것에 덴 적이 있다	68.0(793)	12.5(146)	8.4(98)	4.3(50)	6.8(80)	100.0(1167)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	75.7(884)	11.8(138)	5.7(67)	2.7(32)	4.0(47)	100.0(1167)
뼈가 부러지거나 뺨 적이 있다	95.1(1111)	2.5(30)	1.1(13)	1.1(13)	.1(1)	100.0(1167)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96.6(1128)	1.7(19)	1.0(12)	.7(8)	.0(0)	100.0(1167)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0.4(1054)	5.0(58)	2.3(27)	1.2(14)	1.2(14)	100.0(1167)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	87.6(1023)	7.0(82)	2.6(30)	1.3(15)	1.5(18)	100.0(1167)

- 상당비율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말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6%,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4.2%,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1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11.8%로 나타나는 등 많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24.3%로 나타남.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8%,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2%,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으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9.8%에 달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여부

[표 7]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한 방법

내용/구분		%
1순위	참고 계속 일했다	33.2%
2순위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24.3%
3순위	개인적으로 항의하였다	14.3%
4순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9.8%
5순위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7.7%
6순위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하였다	3.8%
7순위	가족에게 알려져 도움을 받았다	3.5%
8순위	기타	1.4%
9순위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	1.2%
10순위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